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하남선(5호선연장) 1-2공구 건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17.11.23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최영준

<p>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</p> <p>-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나 입출고선 갱문 인근에서 천공기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장비작업자 혼자 정비중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요망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(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)</p>	
<p>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</p> <p>- 입출고선 진출입부 세륜세차시설 바닥이 동결된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요망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(가설도로)</p>	
<p>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</p> <p>- 입출고선 작업장 상부 경사구간에 작업차량이 시동기를 분리하지 않은채로 대기중에 있어, 전도 및 오작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름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, - 인근 크람셀 장비는 시운전중이었으나 운전자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토공박스를 자재위에</p>	

거치하고 운전석을 이탈하였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근로자 교육 실시 요망.
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입출고선 터널 슛크리트용 물탱크 상부 이동 통로로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상부 고정 이 어려우므로 하부 아웃트리거의 정치와 2인 1조 작업기준을 준수바라며 아웃트리거가 파손된 경우 즉시 교체나 보수 후 사용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입출고선 갱문으로 내려가는 가설통로 입출구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정도로 하부 정리가 안되어 좁은 문으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요망
 - 또한 해당 개소 가설계단 계단참에 단차부가 다수 있어 이동시 발에 걸려 근로자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차 완화 조치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입출고선 상부 작업장 터널그라우팅 장비 적재 차량에는 근로자 이동을 위한 가설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부 고정이 미흡하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 있어 근로자 추락우려가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입출고선 가설통로 환기팬 인근 단부(개구부)에 난간 및 방망이 없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(No.1) 있으므로 추락 방지시설 설치 후 추락경고 표지 부착하여 관리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본선 집수정 벽체 철근 결속 작업장은 고소작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승/하강통로 없이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(No.2)로 작업중으로 상시 고소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입출고선 굴착저면 최하단 어스앵커 하중계 설치 개소는 구조계산을 통해 장비운영상 버팀보 6단을 해체한 구간으로 어스앵커 하중계가 장비작업에 의해 간섭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입출고선 갭문 인근 흠막이가시설 측벽에 개설한 배수측구는 배수를 원활히 하여 하부침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월류하여 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흠막이가시설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본선 집수정 흠막이가시설 어스앵커 일부가 현장여건상 띠장을 연속보로 설치하지 못하고 단순보로 시공된 개소는 유지관리상 양단 어스앵커에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해체시 띠장이 빠질 수 있으므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각부에 띠장을 추가설치하고 폐합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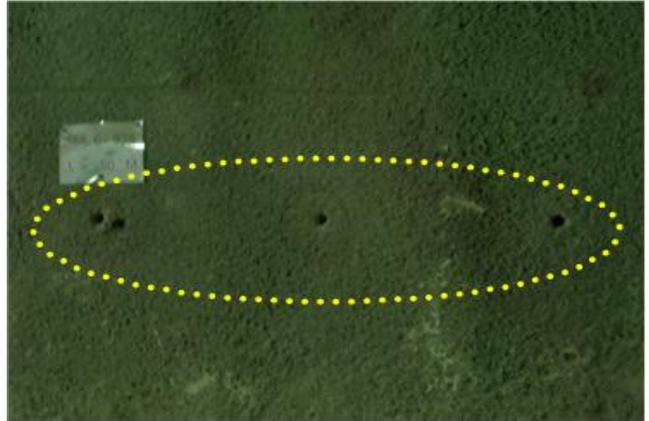


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터널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입출고선 터널내 측벽의 시험공은 숏크리트 안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흠메우기 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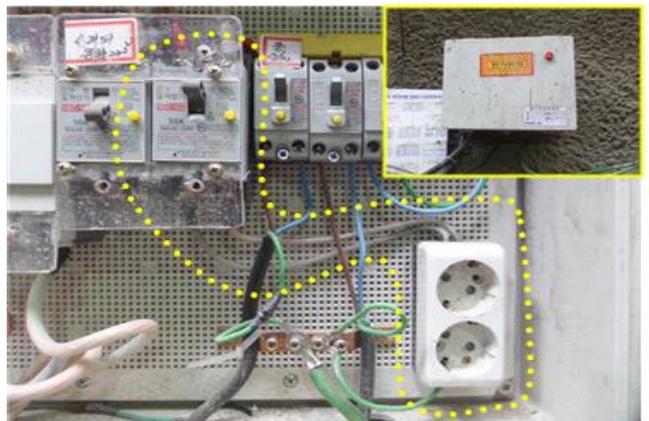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4-2구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항공마대는 인양시 손상이 우려되는 철근 등 날카로운 내용물은 적재를 금지하고 철제 자재는 자재운반구를 사용하여 인양 및 반출하기 바람,
- 마대 인양시에는 적재물이 낙하할 우려가 있으니 마대의 적재용량(90%이내) 기준을 준수하기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4(항공마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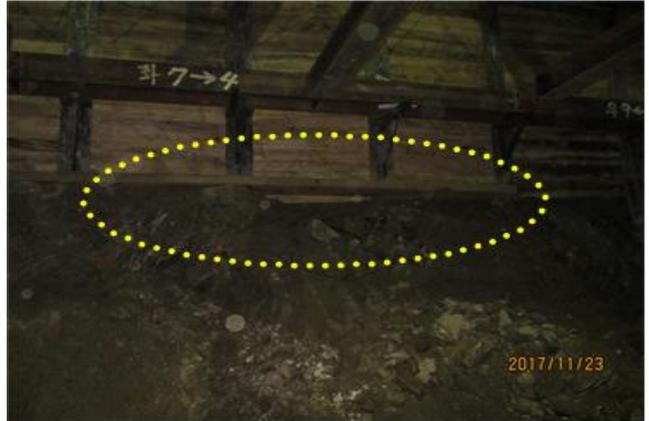
- 입출고선 갱문입구 소분전반내 콘센트는 16A로 50A 누전차단기에 연결되어 콘센트에 용량 16A~50A 기계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20A 누전차단기로 교체하거나 50A이상 콘센트로 교체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/기구의 적정설치 등)



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4-1 작업구간 소단 상부에 C자형 채널 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나, 자재에 비해 소단폭이 좁고, 적재 위치가 불안정하여 하부 근로자 이동 통로로 전도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386조(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)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4-1구간 집수정 설치 구간 벽체 철근 조립 작업장 주변 곳곳에 불필요한 공사용 자재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 후속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제거하기 바람.

